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 정 사 유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 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개별법중에서 의견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한다는 규정과 상충되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과태로 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한 규정을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개정(안 제5조)

□ 참 고 사 항

-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검 토 의 견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와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는자 동법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 조례 제2조(부과대상)과태료 부과대상에게 조례 제3조 2항 및 제5조의“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3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22조1항 청문실시와 제2항 공청회개최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
- 청문을 실시하는 일반사례로는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와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등이며, 공청회 개최는 각종법령 등을 제·개정, 특정구성원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을 제외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을 함에 신속하고 간편한 구술 또는 서면이 가능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처분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 청취하도록 규정과 상충되어 과태료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한 규정은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